

트리스톤자산운용 정보기술(IT)부문 공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8 조 제 3 항 및 「금융 IT 보호업무 모범규준」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

1. 공시 사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및 정보보호부문인력비율 미충족 및 모범규준상의 금융 ISAC 연계시기 미충족

2.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	정보보호 인력비율	정보보호 예산비율
총 임직원수의 5%이상 (4명)	정보기술부문인력의 5%이상 (1명)	정보기술부문예산의7%이상 (18백만원)

3. 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및 예산 비율 (공시일 현재기준)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정보보호인력비율	정보보호예산비율
미충족	미충족	충족
1.6% (1명)	0% (0명)	36.1% (91백만원)

4.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

가. 정보기술부문 인력 비율의 미충족 사유

- 당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하는 IT업무의 비중이 낮은 관계로 인하여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전문유지보수 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부족한 정보기술부문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나. 정보기술부문 인력 비율의 미충족 사유

- 당사의 정보보호업무는 정보기술부문인력이 겸임하여 수행하고 있어 정보보호인력을 0명으로 표기 하였습니다.

5.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 당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정보를 저장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정보보호예산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내부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 금융ISAC(공동보안시스템) 연계여부

- 현재 연계여부 및 연계 예정일 : 미연계
- 미연계시 사유 : 당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ISAC를 연계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공시 화면은 2013년 5월 15일까지 제공하며 공시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당사 홈페이지의 [공시] 란에서 공시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3. 04. 30

트리스톤자산운용(주) 대표이사 황성택, 김영호